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교정업무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교정업무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려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
가. 법 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	법 제44조제1항제1호	700
나. 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4조제2항제1호	350
다.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4조제2항제2호	350
라.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	법 제44조제2항제3호	350

마.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의 제출 및 사업 실적과 결산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	법 제44조제2항제4호	300
바.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	법 제44조제1항제2호	700
사.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을 임명한 경우 1)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임명한 경우 2) 민영교도소등의 장 외의 직원을 임명한 경우	법 제44조제1항제3호	700 600
아.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경우	법 제44조제3항제1호	200
자.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경우	법 제44조제3항제2호	200